

오래전에는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보편적으로 간호사로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하고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어렵게 획득했더라도 영주권이 해결될 때까지 간호사로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이민은 여러 순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현재 3순위의 우선순위 일자는 2006년 6월 8일인데 간호사인 경우 2006년도 6월 8일 이전에 취업이민 청



**이동찬**

이민 변호사

는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획득해야 한다. 주마다 간호사 면허증의 필수조건은 다르지만 CGFNS 시험 합격증명서, NCLEX-RN 시험 합격증명서,

서 간호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시험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NLNAC (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ation Commission)나 CCNE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에서 인정받은 미국 간호대학에서 졸업한 경우 교육검토, 영어시험 없이 비자스크린 증명서만 신청하면 된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 간호사는 영주권이 해결될 때까지 오랫동안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외국인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단기 취업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 간호사의 영주권 취득

원서(I-140)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받아드리고 심사하고 있다. 6년 전에 취업이민을 시작한 간호사의 영주권 서류를 이제야 이민국에서 심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은 6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옛날처럼 간호사가 되면 영주권을 빨리 받는다는 말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간호사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어지는 한 가지 혜택은 있다. 간호사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노동허가서는 미국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이민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민국에서 이미 인정하므로 별도로 노동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간호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외국인 간호사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CGFNS 시험은 외국 간호대학 졸업자의 간호 지식에 대한 시험이고 NCLEX-RN는 미국 공인 간호사 자격시험이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는 NCLEX-RN을 합격해야지 면허증을 받는다.

영주권 신청할 때 필요한 다른 한 가지 조건은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에서 발행하는 비자스크린 증명서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는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교육, 기술, 경력, 면허 등이 미국인 간호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주는 서류이다.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비자스크린 증명서가 없으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한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외국인 간호사들은 3가지 영어시험 (TOEFL, IELTS, TOEIC)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

H-1B 전문직 비자는 간호사에게 맞지 않다. 전문 간호사나 간호사 매니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전문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간호사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 간호사들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민법은 외국인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쉽게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정부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취업이민을 허락한다면 다시 간호사 직이 영주권의 지름길이 되고 미국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충당할 수 좋은 길이 된다고 본다.

(213)291-9980